

배포 일시	2022. 10. 27.(목)			
담당 부서 자동차관리법	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행보험과	책임자	과 장	김은정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	장문석 (044-201-3856)
담당 부서 드론법	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 (044-201-4307)
		담당자	사무관	이석진 (044-201-4315)
담당 부서 광역교통법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아 (044-201-5050)
		책임자	과 장	이성민 (044-201-5130)
		담당자	사무관	곽병철 (044-201-5136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「자동차관리법」·「드론법」·「광역교통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 등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>

- 먼저,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, 침수 전손차량 수출 금지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동차 수리 시 번호판·봉인 탈착 허용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①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
 - 허위·부실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.

- 또한, 중고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,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기록관리·보존토록 하여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.
-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, 현재는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, 이번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안에서 ‘수리를 요하는 신고’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었다.

② 침수 전손 자동차의 수출 금지

- 침수 전손 자동차 국내 유통의 경우 작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지만,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.
- 이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입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도록 개정하였다.

③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 및 봉인 탈착 허용

- 기존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정비 등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하는 경우에도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,
- 정비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정비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탈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한다.

④ 무등록폐차업자의 폐차 수집 광고 금지, 폐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 근거 마련

- 거짓·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등록해체재활용(폐차)업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,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.

- 또한,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폐자동차 및 일부 장치에 대한 수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자동차관리법」은 '23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되고, 침수 전손차량의 해외 유통 방지 근거가 마련되어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〈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

□ 이번 「드론법」 개정안은 급증하는 무인비행장치(드론)의 운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정보체계의 세부 운영범위*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.

* 드론 사고현황, 보험정보, 드론 기체신고 현황, 조종자격 현황, 사용사업 관련(등록·사업계획·양도·양수·합병·상속·휴업·폐업)에 관한 정보

- 그간 드론배송 등 활용산업부터 레저비행까지 드론의 활용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, 보험가입현황, 보험금 지급현황 등 민간이 보유한 안전정보를 제때 수집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.

-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“민·관 드론보험협의체”를 발족('22.9.1)하고, 안전정보관리 등에 상호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 등 상생 노력의 산물로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되었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드론법」은 '23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되고, 나아가 민간 보험업계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선순환구조*가 만들어져 드론이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* 다양한 드론 보험상품 개발 → 보험가입자가 증가 → 보험료 인하

〈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안〉

□ 이번 개정안은 철도 노선이 신설되는 경우 환승역에서의 환승편의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토록 하고,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①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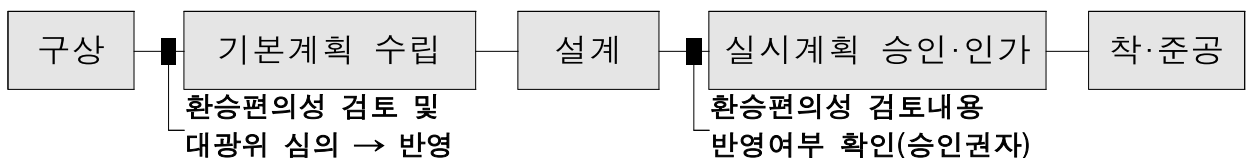
○ 철도(도시철도 포함) 신설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 또는 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위한 노선 배치계획,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.

○ 그간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,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 계획 승인(공사 직전)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후에 이뤄지다 보니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* 전국 주요 철도환승역 107곳 중 69%(74곳)이 환승거리 180m, 환승시간 3분 이상 (한국교통연구원, '21.4)으로, 철도역 환승수준 개선 필요

○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승편의성을 검토한 결과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대광위)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철도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, 철도 이용객의 환승거리와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.

《 환승편의성 검토 과정 》



②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

○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체납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고정 가산금에 체납 기간과 연계하여 일할 계산한 가산금(체납 부담금의

100분의 3 한도내)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변경한다.

-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, 체납 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.

□ 이번에 개정된 「광역교통법」은 '23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「광역교통법」 개정으로 철도 이용객의 환승편의성을 개선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단기 연체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